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16 발의연월일: 2021. 2. 25.

발 의 자:이은주·강은미·김상희

김주영 • 류호정 • 배진교

심상정・양정숙・장혜영

최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지난 20년간 공무원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공무원직장 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은 1998년 제정 당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이에 2020년 새롭게 가입이 허용된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기밀, 보안, 경비'와 '이와 유사한 업무'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경찰공무원의 경우 수사, 정보업무 담당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음. 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지만 공무원 직협법에서는 여전히 6급 이하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게 가입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는 '근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라는 직장협의회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필수적인 활동이 위축되고, 회원 간 소통이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으며,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

직장협의회와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으며 직 장협의회와 기관장 간 합의사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 더라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합의사항과 이행현황 공개 및 분쟁조정 기구 설립이 필요함.

이에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가입 금지 업무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고, 협의회 등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며 직장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한 사항에 관한 기관장의 이행 의무를 뒤기관장이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더불어 합의사항의 해석이나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직장협의회와 기관장 간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분쟁심의위원회를 두어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기관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2항).
- 나.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함 (안 제3조제1항).
- 다. 지휘·감독 업무, 인사·예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라.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 마.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 바. 기관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 사. 합의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회와 기관장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분쟁심의위원회를 두어 조정을 거치도록 함(안 제8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설립할 수 있다"를 "설립할 수 있고,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나. 경찰공무원
- 다. 소방공무원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을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를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협의회의"를 "협의회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는 기관장과"를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 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시·도단위 및 전국 단위기관장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는"을 "협의회등은"으로, "협의회"를 각각 "협의회등"으로 한다.

- 4.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5.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으며,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협의회가"를 "협의회등이"로, "성실히"를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와"를 "협의회등 과"로,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의"를 "협의회등 의"로, "운영"을 "운영・활동"으로, "불리한 조치"를 "승급이나 그 밖에 인사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기관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제목 중 "협의회"는 "협의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각각 "협의회등"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직장협의회 분쟁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로 행정안전부 직장협의회분쟁심의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1. 합의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협의회와 기관장의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
 - 2. 합의사항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회와 기관장의 의견이 불 일치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것으로 보며 협의회와 기관장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③ 분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 ① (생 략)	제2조(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	②
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u>설립할 수 있다</u> .	<u>설립할 수 있고,</u>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u>수 있다</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	제3조(가입 범위) ①
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1. <u>일반직공무원</u>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	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무원	
<u>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u>	<u>가.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u>
<u>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u>	술직렬 외무공무원
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나. 경찰공무원
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	다. 소방공무원
<u>원</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 | <삭 제> 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 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2.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 무원
-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 사하는 공무원

③ (생략)

는 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협의한다.

1. ~ 3. (생략) <신 설>

-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감 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 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③ (현행과 같음)

- 제5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① 협의 회 및 연합협의회(이하"협의 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 장 또는 시·도단위 및 전국 단 위 기관장과----.
 - 1. ~ 3. (현행과 같음)
 - 4.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 하기 위한 사항

<신 설>

<u>4.</u> (생 략)

② <u>협의회는</u>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u>협의회</u>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u>협의회</u> 구성원의 지급 등을 고려하여 <u>협의회</u>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신 설>

-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① 기관장은 <u>협의회가</u>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u>성실히</u>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기관장은 <u>협의회와</u>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u>최대</u> 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③ 기관장은 <u>협의회의</u> 조직 및 <u>운영</u>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에게 <u>불리한 조치</u>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기관 내 성희동, 괴롭힘 예
방 등에 관한 사항
<u>6.</u>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혐의회등은
<u>협의회등</u>
<u>협의회등</u>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 협의
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
정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으며, 업무의 범위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①
- <u>협의회등이</u>
<u>지체 없이 그 요</u>
<u>구에 따라</u> .
②
<u>성실</u>
하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협의회등의
<u></u> 운영·활동
<u>승</u> 급이나 그 밖에 인사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

<신 설>

제7조(<u>협</u>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u>협</u>의회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u>협</u>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u>협</u>의회의 협의위원의 선임, <u>협</u>의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그 밖에 <u>협</u>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 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④ 기관장은 협의회등과의	<u>합</u>
	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	<u>현</u>
	황을 공개하여야 하고, 구체	적
	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	<u>한</u>
	<u>다.</u>	
제	7조(<u>협의회등</u> 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u>협의회</u>	등
	협의회등	
	협의회등	
		<u>협</u>
	의회등	
제	8조(직장협의회 분쟁심의위	<u>원</u>
	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u>하</u>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	의
	회와 기관장의 합의로 행정	<u>안</u>
	전부 직장협의회 분쟁심의위	<u>원</u>
	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1. 합의사항의 해석에 관하	여
	협의회와 기관장의 의견이	불
	일치 하는 경우	
	2. 합의사항의 이행방법 등	에

관하여 협의회와 기관장의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결정이었으면 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것으로 보며 협의회와 기관장은 합관장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분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